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243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2. 10. 7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도병두 의원

고성미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정신적·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, 금천구민들이 스토킹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(안 제4조)

다.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)

라.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(안 제6조)

마. 스토킹범죄 예방과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2. 10. 11. ~ 2022. 10. 17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3.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
5.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, 사법기관,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
2.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
3.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
4.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

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83호, 2021. 4. 20., 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행위”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

가.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
나.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(이하 “주거등”이라 한다)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
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“물건등”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
라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

마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

2. “스토킹범죄”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피해자”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